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농업소득 활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건축허가 취소 및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업소득 활동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할 경우 행정기관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부

답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업계획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u>사업계획의</u>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 ----- ----- ----- -----. 1.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u> 의 ----- ----- ----- -----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